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2019. 8. 28.(수) 10:30】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 시 · 교 통 위 원 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년 8월 28일  
전문위원 이 광 희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19 - 48
-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다. 제 출 일: 2019년 8월 14일
- 라. 회부일자: 2019년 8월 21일

## 2. 제안이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상위 법령 「자연재해대책법」(2017.10.24.)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와 법률에 근거 없는 방재 단원들의 교육수강 의무 삭제 및 여비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지역자율방재단 여비 지급규정 표준화 신설(안 제10조제9항제1호 및 제11항)
- 나. 방재 단원에 대한 의무교육 사항 삭제(안 제13조제2항~제3항)
- 다. 재해보상금 지급절차 신설(안 제17조)
- 라. 별지서식 추가(안 별지 제9호서식)
-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조문 정비 및 ‘지역자율방재단 관련 지자체 조례 표준안’ 개정 사항 반영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19. 7. 10. ~ 2019. 7. 30.)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가. 개정취지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2017.10.24.),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역자율방재단 관련 지자체 조례 표준안’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 개정내용

- 1) 안 제10조제9항제1호 및 제11항: 지역자율방재단 여비 지급규정 표준화 신설
  - ‘식대, 여비, 유류대’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로 여비 지급규정을 표준화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하도록 신설
- 2) 안 제13조제2항~제3항: 방재 단원에 대한 의무교육 사항 삭제
  - 단장, 임원 및 단원에 대한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교육(연 2회 8시간)사항 삭제

### 3) 안 제17조: 재해보상금 지급절차 신설

- 재해보상금의 청구 방법,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재해보상금 지급절차 근거 기준을 마련
- 「민법」 제1000조~제1003조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 순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재해보상금의 환수 규정을 신설

### 4) 안 별지 제9호 서식(보상청구서) 신설

- 안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요양, 장애, 장제, 유족 보상청구서) 신설

### 5) 그 밖에 표준 조례안 용어 및 조문 등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조문 정비 및 ‘지역 자율방재단 관련 지자체 조례 표준안’ 개정 사항 반영

##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 및 ‘지역자율방재단 관련 지자체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17조에서 재해보상금 피청구권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이 지급된다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별지 제9호 서식(안)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별지 제9호 서식	변경 전	변경 후
앞쪽 하단	“안전관리과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뒤쪽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 관련 법령

###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제27조의3제2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 급별 장 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6. 보상금은 위 표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